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698 제출연월일: 2024. 7.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 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5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6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제62조제2항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휴직 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
	<u>o</u>)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③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	
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	
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	
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	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 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 정한다.

- 6. (생략)
- ④ ~ ⑧ (생 략)
- 제49조(휴직기간) ①・② (생 략)
 -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다.
 - 1. ~ 3. (생 략)
 -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 5. (생략)
 - ④ (생략)
-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 ④ (생 략)
 - 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 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 정한다.

- 6.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49조(휴직기간) ① ②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 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 년을 넘을 수 없다.
- 5.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 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

<u>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u> <u>있다.</u>

⑥ (생략)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0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u>징계</u>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 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는 다시 <u>징계 및 징계부가금</u>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있다.

③ (생략)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 저 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당하는 경우: 5년</u>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
<u>하는 경우: 3년</u>
② <u>징계의결</u>
<u> </u>
<u>징계의결등</u> -
③ (현행과 같음)
1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
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년대상 성범죄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수있으며,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장수할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생 략)

-----<u>명할</u> 수 있 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 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국세강제징수----. -----<u>.</u>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 탁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